

#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2
------	-----

제출년월일 : 2002. 4. 8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 방지(안 제4조제2항)
- 나. 자치센터기능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안 제5조제1항)
- 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 확대(안 제6조제2항)
- 라.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조성(안 제7조제2항)
- 마.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적지원 원칙(안 제7조제5항)
- 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마련  
(안 제7조제6항)
- 사.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주체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 아. 사용료 등을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안 제10조제3항)
- 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에 한정함(안 제15조)
- 차.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 카.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안 제17조제2항)
- 타.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2002.3.7)
-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2002. 3. 7)

## 4. 본문 : 덧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로 한다.

제2조제2호중 “각종직능·자생단체” 를 “각종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신설한다.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군수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읍면장은 “사용료” 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시설 등” 을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 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1월전까지” 를 “3월전까지” 로 하며, 제2항중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을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으로 하고 “심의를 거쳐” 를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5조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운영 등” 을 “운영” 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위원 스스로” 를 “스스로” 로 하고 동항제5호중 “기타 위원으로서” 를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로 하고 제2항중

“위원의 임기는” 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으로 한다.

①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중 “위원” 중 “고문을 포함한 위원”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 신·조문 대비표 및 조문별 개정 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조</u> 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주민자치센터”라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단체”라함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u>각종 직능·자생단체</u>,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8조</u> 및 <u>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u> ——</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p> <p>1.(현행과 같음)</p> <p>2. -----</p> <p>-----<u>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u> <u>단체</u> -----</p>	<p>◦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별표1의 「2.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중 「타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p> <p>◦ NGO 등 민간단체 포함 명확화</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p>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p> <p>2.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p> <p>(신설)</p> <p>3.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p>	<p>②자치센터의 명칭은“○○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p> <p>2.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p> <p>3.건강중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p> <p>4.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 방지</li> <li>◦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li>   <li>◦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li>   <li>◦ 주민자치기능 분야 예시의 구체화</li>   <li>◦ 사(私)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지양</li>   <li>◦ 지역복지기능 추가</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4.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u></p> <p><u>5.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u></p> <p>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p><u>5.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u></p> <p><u>6.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u></p> <p>②(현행과 같음)</p> <p><u>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u></p> <p>제6조(시설및프로그램) ①(현행과 같음)</p>	<p>◦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 도모</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p> <p>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 확대</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p> <p>②읍면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li> <li>•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 적극 참여 유도</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p> <p>◦ 시·군·구의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 제시로 건전한 발전 도모</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신설)</p> <p>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p> <p>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 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⑥군수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자원봉사자) (현행과 같음)</p> <p>제9조(강사) (현행과 같음)</p>	<p>·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자문단 설치 운영 근거</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p>	<p>제10조(사용료등) 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등-----</p> <p>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회비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제외)</li> <li>•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 명확화</li> <li>•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시·군·구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li> <li>-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li> </ul> </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지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 사용료 등 징수시 일정 이용지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p> <p>◦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 제고</p> <p>◦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 확대</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신설)</p> <p>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⑦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p>제11조(이용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li> <li>사용료 등의 납부는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에 한함을 명확히 규정</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p> <p>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u>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u></p> <p>제12조(주민참여) ①~③(현행과 같음)</p>	<p>◦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u>1월전까지</u>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읍면장은 <u>자치센터 운영에 따른</u>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보고)① ----- -----<u>3월전까지</u> ----- ----- -----</p> <p>②----- <u>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u> ----- -----<u>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u> ----- -----</p>	<p>◦ 예산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보고기한 조정</p> <p>◦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 포함 명확화 및 보고시한 명시</p>



현행	개정	개정사유
(신설)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 제한적 명시</li> </ul>
(신설)	<p>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li> </ul>
<p>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li> <li>◦ 고문제도 신설 및 시·군·구의원의 당연직고문 위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적 규정이므로 시·군·구의원이 원치 않는 경우 미위촉 가능</li> </ul> </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u>덕망이 있는 자</u>를 <u>위원으로 위촉한다.</u></p> <p>(신설)</p> <p>(신설)</p>	<p>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u>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u>를 <u>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p> <p>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u>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u></p> <p>2. <u>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위촉시 <u>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도입으로 공정성 제고</u></li> <li>◦ <u>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u></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이 100분의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③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 각층 예시에 “경제계”, “일반주민” 포함</li> <li>◦ 어느 한 계층이 속한 위원이 1/3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 유지</li> <li>◦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1/3이상 되도록 권장</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신설)	<p>⑤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문에 대한 위촉권자(읍·면·동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격요건 명시</li> </ul>
(신설)	<p>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문,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u>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참여기회 확대</li> <li>•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방지</li> <li>•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li> </ul>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신설)</p> <p>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19조(간사) ①~②(현행과 같음)</p>	<p>◦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 현상 보완</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당해 읍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u>위원 스스로</u> 사퇴를 원하는 경우</p>	<p>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3. <u>스스로</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촉대상에 위원 이외에 고문 포함</li> <li>◦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li> <li>◦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 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li> </ul> <p>◦ 고문도 포함되도록 용어 정리</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신설)</p> <p>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4. <u>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u></p> <p>5. <u>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u> -----</p> <p>② -----  <u>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u>-----</p>	<p>◦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p> <p>◦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p> <p>◦ 해촉후 후임자 임기 관련 당연직이 아닌 고문 포함</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설)</p>	<p>제21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p>	<p>•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p> <p>• 고문의 표결권 여부 명확화</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신설)</p> <p>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⑤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2조(회의록)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실비보상등) <u>고문을 포함한 위원은</u> -----</p> <p>제24조(시행규칙등)(현행과 같음)</p>	<p>◦ 읍면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 명확화</p> <p>◦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 포함</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u>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u></p> <p>(신 설)</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p> <p>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행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보장</li><li>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시 1년의 유예기간 설정으로 혼란 최소화</li></ul>